

사업체명칭

소재지

1 귀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있음 → 노동조합 수는 몇 개입니까? (☐ 1개 ☐ 2개 이상) ☐ 없음

2 귀사는 기본급 임금체계 유형이 있습니까?

<임금체계 유형> * 기본급의 임금결정 방법 유형을 묻는 것으로, 수당의 결정 방법(직무수당 등)이 아님

「호봉급」 호봉·근속년수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근속급)

「직능급」 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숙련급, 기능급 등)

「직무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기타 기준」 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외에 다른 기준

☐ 있음 → ▶ 임금체계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선택) → (2-1번 문항으로 이동)

☐ 호봉급	☐ 호봉표가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호봉 상승에 따른 1년 간 기본급 상승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0~2%미만 ☐ 2~4%미만 ☐ 4~6%미만 ☐ 6% 이상
☐ 직능급	☐ 직능자격 또는 직능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임금을 그러한 자격 내지 등급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직무급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여 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기타 기준	()

▶ 적용근로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 , ,)

① 호봉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기타 기준

☐ 없음 - (3번 문항으로 이동)

2-1. 외부 임금정보를 수집하여 귀사의 임금수준을 조정합니까?

☐ 수집하고 있음 → ▶ 수집방법은?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선택)

☐ 정부 ☐ 컨설팅회사 ☐ 산별노조 ☐ 사용자단체 ☐ 업계모임 ☐ 기타()

☐ 수집하고 있지 않음

3 귀사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연봉제」 근로자 '개인'의 능력,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개인의 임금 전부 또는 일부분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

☐ 도입하고 있음 → 전체 종사자 중 연봉제 적용 비율은? (%)

☐ 도입하고 있지 않음 → 향후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4 귀사는 성과배분제(집단적성과급)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성과배분제」 '기업, 사업장, 부서 단위'로 정해놓은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현금, 주식 등의 형태로 사후에 배분하는 '집단적' 성과급 제도('개인별'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이 아님)

☐ 도입하고 있음 → 전체 종사자 중 성과배분제 적용 비율은? (%)

☐ 도입하고 있지 않음 → 향후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5 귀사는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운영하고 있음 → ▶ 정년제 구분 (택일) → (5-1번 문항으로 이동)

- ☐ 단일정년제 (정년: 만 세)
- ☐ 직급별 정년제 (최고정년: 만 세, 최저정년: 만 세)
- ☐ 직종별 정년제 (최고정년: 만 세, 최저정년: 만 세)
- ☐ 직급별+직종별 정년제 (최고정년: 만 세, 최저정년: 만 세)

☐ 운영하고 있지 않음 → (6번 문항으로 이동)

5-1. 귀사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고용 제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제도

- ☐ 운영하고 있음 → ▶ 재고용기간[반복 갱신하는 경우 최장기간] (년 월)
- ▶ 재고용한 근로자의 직종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선택)
- ☐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 판매, 서비스직 ☐ 농림어업 숙련직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단순노무직
- ☐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향후(3년 이내)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 있음[년도, ☐ 미정] ☐ 없음)

5-2. 귀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동결포함)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도입하고 있음 →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임금 감액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최초 도입연도	년	②적용 이후 최초 임금 감액 연령	만	세
③평균 임금 감액률	☐ 동결(0%) ☐ 10%이하 ☐ 10%초과~20%이하 ☐ 20%초과~30%이하 ☐ 30%초과			

☐ 도입하고 있지 않음 → 향후(3년 이내)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 있음[년도, ☐ 미정] ☐ 없음)

6 귀사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 ☐ 운영하고 있음 →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는 직종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선택)
- ☐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 판매, 서비스직 ☐ 농림어업 숙련직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단순노무직
- ☐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향후(3년 이내)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7 귀사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제도별 미도입 선택 시 시범조사 1번 문항으로 이동)

탄력근로제	☐ 도입 ☐ 미도입	도입 단위는?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일의 양에 따라 주(일)의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평균 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선택근로제	☐ 도입 ☐ 미도입	도입 단위는?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평균 주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제52조)
재량근로제	☐ 도입 ☐ 미도입		「재량근로제」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58조제3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도입 ☐ 미도입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노사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58조제1,2항)
보상휴가제	☐ 도입 ☐ 미도입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제57조)

시범조사

1. 유연근로시간제 미도입 시 미도입 사유는? (각 제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2개까지 선택)

탄력근로제	(,)	① 제도를 잘 몰라서	②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가 어려워서
선택근로제	(,)	③ 수당 감소 등 근로자 반대	④ 도입요건이 엄격해서(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특정 등)
재량근로제	(,)	⑤ 거래처, 관련 부서 등과의 업무협약이 어려워서	⑥ 도입예정(검토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⑦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운영 가능	⑧ 다른제도 활용 중
		⑨ 단위기간(정산기간)이 짧아서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에 한해 선택)	

2. 귀사는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 ☐ 제공하고 있음 → ▶ 해당되는 서비스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선택)
- ☐ 경력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취·창업시 필요한 교육지원 ☐ 적합한 취업처 알선지원 ☐ 기타()
- ☐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향후(1년 이내)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3. 관공서 공휴일 중 ①휴일로 정한 날, ②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날이 있습니까?

항목	휴일 유급	휴일 무급	연차휴가 대체	항목	휴일 유급	휴일 무급	연차휴가 대체	항목	휴일 유급	휴일 무급	연차휴가 대체
3.1절	☐	☐	☐	어린이날	☐	☐	☐	현충일	☐	☐	☐
광복절	☐	☐	☐	개천절	☐	☐	☐	한글날	☐	☐	☐
신정	☐	☐	☐	설 연휴	☐	☐	☐	추석 연휴	☐	☐	☐
석가탄신일	☐	☐	☐	크리스마스	☐	☐	☐	선거일	☐	☐	☐
임시공휴일	☐	☐	☐	대체공휴일	☐	☐	☐				